표제 17. 캘리포니아 공기자원협의회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작업 통제 조치에 대한 수정안 및 퍼클로로에틸렌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요구조건 채택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 통지

공기자원협의회(Air Resources Board, 이하 'ARB' 또는 '협의회')는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퍼클로로에틸렌(퍼크)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퍼크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요구조건을 채택하는 안건을 검토하고자 다음 일시 및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날짜: 2007 년 1 월 25 일

시간: 오전 9 시

장소: 캘리포니아환경보호청(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ir Resources Board
Byron Sher Auditorium, Second Floor
1001 I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95814

이 안건은 이틀 일정으로 잡혀 있는 협의회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으로, 회의는 2007 년 1 월 25 일 오전 9 시에 시작하여 다음날인 2007 년 1 월 26 일 오전 8:30 에 속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2007 년 1 월 26 일까지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건이 검토되는 날을 알려면 개회일인 2007 년 1 월 25 일에서 적어도 10 일 전에는 입수할 수 있는 회의 의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감각 계통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점자, 큰 글씨, 카세트 테이프, 컴퓨터 디스크 등으로도 제공됩니다. 장애인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ARB 의 장애인 담당 코디네이터(Disability Coordinator)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육성 전화는 (916) 323-4916 이며, 캘리포니아 중계서비스(California Relay Services)를 통할 때에는 711 번입니다. 공청회에서 한국어로 발언하실 분들은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을 원하시면 Linda Keifer(린다 카이퍼)에게 (916) 323-4327 또는 lkeifer@arb.ca.gov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영어에 어려움이 있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실 분들은 (916) 323-7053 ARB 이중언어 담당 매니저(Bilingual Manager)에게 연락하십시오.

제안된 조치의 중요 요지 및 정책 기조문 개요

관련 조항: '캘리포니아 제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CCR) 표제 17, 제 93109 조에 대한 수정안 제안 및 CCR 표제 17, 제 93109.1 조와 93109.2 조의 채택을 제안.

배경 설명: 1991 년, ARB 는 퍼크를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toxic air contaminant, TAC)로 확인했습니다. 주법의 규정에 따라 ARB 는 그 다음 단계로 퍼크 배출가스의 감축 필요성을

평가했습니다. 1993 년, 협의회는 퍼크 배출가스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어 퍼크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CCR 표제 17, 제 93109 조). 일반적으로, 통제 조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통제기술'(the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BACT) 또는, 다른 무엇보다도, 비용 및 위험 요인을 감안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 방법입니다. 기존 규정에는 퍼크 드라이클리닝 장비, 작업, 유지관리, 기록유지, 보고 등에 대한 요구조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법에 허가된 바와 같이, '남부연안 대기질 관리국'(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이하 '남부연안 AQMD')은 2002 년에 '규칙 1421,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퍼클로로에틸렌 배출가스 통제'(Rule 1421, Control of Perchloroethylene Emissions from Dry Cleaning Systems)(이하 '규칙 1421')라는 자체 규칙을 수정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현재 퍼크 드라이클리닝 시설의 신규 개설 또는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남부연안 AQMD' 내에서 행해지는 기존의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퍼크의 사용을 2020 년 12 월 1 일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규칙 1421 은 개조한 기계를 2004 년 7 월 1 일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남부연안 AQMD 에 있는 기존의 모든 퍼크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은 이차 제어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칙 1402, 기존 오염원에서 방출되는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 통제'(Rule 1402, Control of Toxic Air Contaminants from Existing Sources)라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규칙은 시설의 평생 암발병률을 2007 년 11 월 1 일까지 1 백만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2020 년 12 월 1 일 전에 기존 기계를 새 퍼크 기계로 대체하기로 하면, 해당 시설은 이차 제어 기계를 구입하고 '규칙 1401,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 신규 오염원 검토'(Rule 1401, New Source Review of Toxic Air Contaminants)라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규칙 1401 은 시설의 평생 암발병률을 1 백만분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3 년부터 2005 년까지, 실무진은 드라이클리닝 ATCM 의 효율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퍼크 배출가스가 70% 정도 감소되었으나, ARB 실무진은 더 노력을 기울이면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퍼크 배출가스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실무진은 드라이클리닝 ATCM 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고, 협의회는 이 수정안을 2006 년 5 월 25 일에 검토하였습니다.

2006 년 5 월 25 일에 있은 공청회에서, 협의회는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 관련 산업계, 업계 연합회, 환경단체, 지역 대기오염 통제국, 이해 관계에 있는 그 밖의 개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ARB 실무진의 제안을 지지하는 발언도 있었으나, 논평자들은 ARB 가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의 퍼크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논평자들이 이렇게 권고한 주된 근거는 퍼크의 폐해가 크다는 것과 드라이클리닝을 대체할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협의회는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무진의 제안을 검토한 후 제안 수정안의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며, 실무진에게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퍼크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키는 새로운 제안을 마련하여 협의회에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제안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비용 부담을 고려하고,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러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u>제안된 규제 조치의 내용:</u> 이 통지문에 소개되어 있는 규제적인 제안 수정안은 드라이클리닝 작업시 퍼크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려고 마련된 것입니다. 수정 규정은 퍼크 드라이클리닝

업계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존 규정은 일괄작업 기계(transfer machine), 통풍구가 달린 기계(vented machine), 셀프 서비스 기계(self-service machine)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수정 규정은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금지 조치를 다음 사항에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1) 신규 퍼크 기계의 판매 또는 리스, 2) 건조 캐비닛, 3) 퍼크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의 세척조 작업. 이 밖에도, 신규 시설에서는 아무도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설치 또는 가동하지 못하거나 퍼크 발수처리 작업(Perc water-repelling operations)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퍼크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는 명시된 날짜까지 기존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규정에 대한 제안 수정안은 기록유지, 보고, 우량 작업 관행 등을 추가로 의무화할 것입니다.

이번 제안에 아울러 포함된 것은 CCR 표제 17 에 신설된 제 93109.1 조 및 제 93109.2 조에 규정된 퍼크 솔벤트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요구조건입니다. 이 요구조건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 41998 조(입법안 998, 제 821 장, 2003 년 법령)의 시행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무진은 이 제안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공청회의 검토를 거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이 제안과 아래에 논의된 대안 및 대중의 의견을 검토한 후 이 규정 또는 대안적 요건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u>대안의 내용:</u> 협의회는 이 제안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안적 접근방법의 범위는 넓습니다. 퍼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흔한 솔벤트는 스모그를 만드는 배출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협의회는 퍼크 사용 규제와 관련한 경감 조치로 스모그를 만드는 배출가스를 방출하는 기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독성도 없고 스모그도 만들지 않는 대안도 있습니다(예: 습식 세탁과 이산화탄소 세탁). 협의회는 이 같은 대안들을 감안하여 특정 시한까지 독성도 없고 스모그도 만들지 않는 배출가스만 허용하게 하는 요구조건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퍼크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에서 특정 시한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남부연안 AQMD 요건과 유사하게 퍼크 드라이클리닝 시설이 영업할 수 없는 위험 임계값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u>비교 가능한 연방 규정</u>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은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 발생하는 퍼크 배출가스를 통제할 목적으로 1993 년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배출가스 기준을 우선 공포했습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규정은 1996 년 5 월 21 일부로 연방 규정 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연방 등재부 제 61 권 25397 면). 2006 년 7 월 27 일부로 미국 EPA 는 1993 년 기준에 대한 개정 기준을 공포함으로써 기존 및 신규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 발생하는 퍼크 배출가스를 더욱 제한하였습니다. 미국 EPA 의 최종 규칙을 검토하고 나서, 실무진은 제안된 수정 규정의 배출가스 관련 요건이 미국 EPA 의 2006 년 최종 규칙보다 더욱 엄격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드라이클리닝 ATCM 수정안은 협의회가 채택할 경우 미국 EPA 에 제출하여 연방 규정 합치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 입수 및 담당관 연락처

협의회 실무진은 제안된 규제 조치에 대한 '실무진 보고서: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작업 통제 조치에 대한 제안 수정안 및 퍼클로로에틸렌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요구조건 채택에 대한 일차 사유서'(Staff Report: Initial Statement of Reasons for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trol Measure for Perchloroethylene Dry Cleaning Operations and Adoption of Requirements for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of Perchloroethylene, 이하 '실무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 제안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실무진 보고서의 사본 및 제안된 규제 조치의 전문을 입수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으며, 2007 년 1 월 25 일에 있을 공청회로부터 최소한 45 일 전에 구할 수 있습니다: Public Information Office, Air Resources Board, 1001 I Street, Visitors and Environmental Services Center, 1st Floor, Sacramento, California 95814, 전화 (916) 322-2990. 이 밖에도, 개요서(Executive Summary) 사본 및 제안된 규제 조치의 전문이 한국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실무진 보고서는 아래에 소개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아래에 기재된 실무진에게 연락하여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유서'(Final Statement of Reasons, FSOR)는 완성되는 대로 입수가 가능합니다. 이 통지에 기재된 담당관들에게 연락하여 요청하시거나, 아래에 소개된 웹사이트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제안된 규정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지정된 다음 담당관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Robert Krieger(로버트 크리거) – 배출가스평가과 과장(Manager of the Emissions Evaluation Section), (916) 323-1202 또는 rkrieger@arb.ca.gov, 혹은 Mei Fong(메이 퐁) – 공기자원 엔지니어(Air Resources Engineer), (916) 324-2570 또는 sfong@arb.ca.gov.

아울러, 제안된 행정조치의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의는 당기관을 대표하는 지원 인력으로 지정된 다음 직원들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Lori Andreoni(로리 안드레오니) – 협의회 서기(Clerk of the Board), (916) 322-5594, 또는 Alexa Malik(알렉사 말리크) – 규제 조정관(Regulations Coordinator), (916) 322-4011. 협의회는 이 규칙 제정 조치에 대한 기록을 편찬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제안의 토대가 되는 모든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의 열람은 위 담당관들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통지와 실무진 보고서 그리고 FSOR 을 비롯한 모든 후속 규제 서류는 완성되는 대로 규칙 제정과 관련한 ARB 인터넷 사이트인 www.arb.ca.gov/regact/perc07/perc07.htm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공공 기관과 업소 및 개인에게 드는 비용

제안된 규정을 정히 준수함으로써 공공 기관과 일반 개인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또는 절감액에 관한 협의회 집행관(Executive Officer)의 판정사항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으며 실무진 보고서에는 더욱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부법(Government Code) 제 11346.5 조 (a)(5)항 및 제 11346.5 조 (a)(6)항에 의하여, 집행관은 제안된 규제 조치로 인하여 아래의 설명과 같이 주정부 기관 또는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에 비용 또는 절감액이 발생하든가, 지역 기관에 정부법 표제 2 제 4 절 제 7 부(제 17500 조부터 시작)에 의하여 주정부가 배상할 수 있든 없든 비용 또는 의무가 발생하든가, 주정부 또는 지방 기관에 기타 비임의적인 비용 또는 절감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은 퍼크 기계를 여전히 가동하는 한편 예비 개스킷 세트와 예비 린트 필터를 구입하고 퍼크 기계를 교체하려면 자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정국은 캘리포니아 내 12 개 교정 시설에서 12 대의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2 대의 드라이클리닝 기계 중 11 대는 퍼크 기계이므로 퍼크를 쓰지 않는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 후 처음 3 년간 총 7 대의 기계가 교체돼야 하는데 그 때까지 기계의 사용 연한이 15 년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5 대의 퍼크 기계는 사용 연한이 15 년이 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예비 개스킷, 예비 린트 필터, 설치 및 기계 비용 등을 기준으로, 처음 3 년간 교정국이 부담해야 할 예상 재정 비용은 $169,500 ~ $522,000 이며, 제안 수정안이 시한까지 시행되는 동안 이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 총액은 $268,000 ~ $892,000 입니다. 제안된 규제 조치는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ARB 실무진은 시행 지침 서류를 작성하고 지역 대기오염 통제국과 대기질 관리국(지역 대기국)의 수정 통제 조치 시행 및 관련 기술 문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침 서류를 작성하고 지역 대기국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업무에는 일회 비용이 들며, 이 비용은 2008~2009 또는 2009~2010 회계연도 중에 발생할 것입니다. ARB 에 드는 예상 비용은 1/4 인년(person/year) 또는 약 $25,000 입니다. 이 밖에도, ARB 는 제안 수정안으로 인하여 '핫스폿'(Hot Spot) 프로그램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에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3 년 동안 ARB 는 $22,000 의 손실을 보고, 전면 시행시에는 $355,000 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손실은 '핫스폿' 프로그램으로 대안 보고를 의무화하면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 제정 조치로 발생하는 모든 시행 비용은 ARB 의 기존 예산 한도 내에서 흡수될 것입니다.

제안 수정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집행 비용은 없습니다. 이는 제안 수정안이 시행되어도 지역 대기국이 추가로 감독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행 비용은 퍼크 시설 및/또는 장비의 숫자에 직접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퍼크 시설에서 퍼크 장비 사용을 중단하면 할수록 지역 대기국이 연례 시설 검사에 들여야 하는 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 밖에도,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 퍼크 사용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역 대기국은 '핫스폿' 프로그램을 통해 퍼크 시설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수수료 수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3 년 동안 지역 대기국이 올릴 수 있는 순전한 비용 절감액만 해도 $30,000~$70,000 에 이를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안된 규정이 시한까지 시행되는 동안 지역 대기국이 올릴 수 있는 순전한 비용 절감액은 $1,769,000~$3,301,000 이 될 것입니다.

ARB 실무진은 이 규제 제안을 개발하면서 전형적인 일반 개인 또는 업소에 잠재적으로 미칠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업소에 미치는 비용 부담은 해당 시설이 선택하는 비(非)퍼크계 드라이클리닝 기술 및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ARB 실무진은 전형적인 일반 개인 또는 업소가 제안된 요건을 정히 준수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 부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제안 수정안으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은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가 통상적인 수명이 다 되었을 때에 그 퍼크 기계에 비하여 대안적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증가 자본 비용입니다. 퍼크 기계의 통상적인 수명은 업계의 조사를 토대로 15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대안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진은 드라이클리닝 ATCM 에 대한 제안 수정안이 시행되면 시설당 $1,000(습식 세탁 시스템)에서 $144,350(이산화탄소 시스템)에 이르는 추가 증분 자본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대안 기술인 발화점 높은 탄화수소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퍼크 기계로 대체할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자본 투자액은 $18,500~$24,350 에 이를 것입니다.

대안 기술에 드는 연간 경상비는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가동, 유지하는 데 드는 경상비와 같거나 약간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경상비의 핵심적인 변수는 인건비로, 대안 기술 쪽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히 훈련하고 경험을 축적하며 기술이 진보하면 장래에는 인건비 차이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드라이클리닝 시설의 주된 고객은 개인 소비자들입니다. 대부분의 드라이클리닝 업소가 법규 준수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세탁료 인상이라는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RB 실무진은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이 비용 증가분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보고, 시설 소유주가 단기간(5 년)에 순현금 지출분을 회수한다는 가정 아래 소비자들에게 가중될 수 있는 비용 부담액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기존 기계의 사용 연한이 15 년이 되어 이를 탄화수소 기계로 교체하는 시설의 경우, ARB 실무진의 추산으로는 평균적인 업소의 소유주라면 소비자에게 의복당 $0.56 의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 공존 시설 소유주의 경우는 기계의 통상 수명이 3 년 단축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용을 의복당 약 $0.63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퍼크 유통업자와 제조업자들은 제안된 규정에 의하여 퍼크 구입 기록 및 드라이클리닝 업소에 대한 퍼크 판매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해당시 드라이클리닝 업소에 대한 연간 퍼크 판매액을 ARB 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규 퍼크 유통업자는 모두 그 연락처를 ARB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록유지는 어차피 사업의 일상적인 일부이기 때문에, 실무진의 예상으로는 개개의 퍼크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가 일년에 불과 8 시간 안팎의 시간을 들여 기록을 유지하고 보고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히려 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관(Executive Officer)은 당초 판단하기를 제안된 규제 조치가 주 전역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역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영향, 즉 타주 업소들에 대한 캘리포니아 업소들의 경쟁력 등 업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내지는 전형적인 일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법 제 11346.3 조에 따라, 집행관은 제안된 규제 조치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제거하든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신규 업소를 칭출하거나 기존 업소를 제거하든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현재 사업 중인 업소를 팽창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정이 빠듯한 일부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은 수정안 준수에 필요한 자본이 없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 수정안은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설 폐업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 기간을 두어 대부분의 경우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잔존 수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관은 CCR 표제 1, 제 4 조에 의하여, 제안된 규제 조치가 소규모 업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정부법(Government Code) 제 11346.3 조 (c)항 및 제 11346.5 조 (a)(11)항에 따라, 집행관은 업소에 적용되는 규정의 보고 요건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과 안전, 안녕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제안된 규제 조치에 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협의회가 고려하였거나 협의회가 분별하여 관심을 가졌던 대안 중에는 해당 조치가 의도하는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된 조치보다 더 효과적인 합리적인 대안은 전혀 없거나, 그만큼 효과적이면서 영향을 받는 일반 개인에게는 부담이 덜 가는 합리적인 대안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여야만 합니다.

제안된 규제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자세한 평가 내용은 실무진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u>의견 제출</u>

일반인도 본건과 관련한 의견을 공청회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전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검토를 요하는 서면 의견은 **늦어도 2007 년 1 월 24 일 정오 전까지** 다음 주소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우편주소: Clerk of the Board
Air Resources Board
1001 I Street, 23rd Floor
Sacramento, California 95814

전자우편 접수: http://www.arb.ca.gov/lispub/comm/bclist.php

팩스 접수: (916) 322-3928

서면 의견서는 30 부를 협의회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오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ARB 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의 진술서의 경우 최소한 공청회 10 일 전까지 접수시켜 주셔서 ARB 실무진과 협의회 위원들이 각 의견을 시간 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ARB 는 일반인들도 제안된 규제 조치 변경을 위한 제언을 공청회 전에 미리 준비하여 실무진의 관심을 유도하여 주실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는 분들의 경우 검토의 편의를 위하여 의견서에 제안의 제목을 달아주실 것을 요청하오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권한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참고 조항

본 규제 조치는 다음 법규에서 ARB 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 39600, 39601, 39650, 39655, 39656, 39658, 39659, 39665, 39666 및 41998 조,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표제 42, 제 7412 조 및 제 7416 조. 본 조치는 다음 법규의 시행, 해석 및 구체화를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보건안전법 제 39650, 39655, 39656, 39658, 39659, 39666, 39674, 41998 및 42402.4 조, 미국연방법전 표제 42, 제 7412 조 및 제 7414 조,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 표제 40, 제 63.14, 63.99, 63.320, 63.321, 63.322, 63.323 및 63.324 조.

공청회 절차

공청회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중 캘리포니아행정절차법(Californi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표제 2, 제 3 절, 제 1 부, 제 3.5 장(제 11340 조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공청회 후 ARB 는 원안대로 또는 비실질적이거나 문법적인 변경을 가하여 규제 용어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변경된 규제 용어가 제안된 규제 조치에서 비롯한 것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적절히 통지하여 변경된 본문이 제안된 원래의 본문과 충분히 연관되어 있는 경우, 기타 변경을 가한 제안된 규제 용어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 사항을 분명히 표시한 규제 본문의 전문은 서면 의견을 받기 위하여, 채택되기 최소한 15 일 전에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일반인은 변경된 규제 조치의 본문 사본을 다음 주소로 ARB 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Public Information Office, Air Resources Board, 1001 I Street, Visitors and Environmental Services Center, 1st Floor, Sacramento, California 95814, 전화 (916) 322-2990.

캘리포니아 공기자원협의회

Catherine Witherspoon(캐서린 위더스푼)
집행관

날짜: 2006 년 11 월 28 일

캘리포니아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난은 현실입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arb.ca.gov 를 보십시오.